

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장 용 대

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0년 8월 2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9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지원과 지역내 중소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제도를 마련하고
-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범위를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감면대상 공공기관으로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6대 국책기관 소속직원 거주지 이전 유도 및 정착지원을 위한 취득·등록세 감면제도를 균형있게 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 (안 제28조의2)
 - 감면대상 : 충청북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,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

- 감면물건 :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
받는 기간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
(보조금신청일 기준 이전 24개월이내 신규투자 취득분 포함)
- 감면기간 : 고용보조금 최초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
지급받는 기간
- 감면세목 및 감면율 :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

○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감면대상 범위 확대 (안 제30조의3)

- (현행) 혁신도시 및 혁신도시이외 개별이전이 승인된 공공기관(중앙
행정기관은 제외)
- (개정) 이외 수도권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포함
⇒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식약청 및 국립보건연구원이 감
면대상 공공기관으로 포함되어 식약청, 국립보건연구원의 소
속직원도 주택 취득시 취득·등록세 감면 가능

4. 검토의견

이번에 개정하는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용
창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일자리창출을 지원하고 지역
내 중소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취
득세와 등록세 감면제도를 마련하고,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범위를 오
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
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28조의2를 신설하여 고용창출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,
 - 감면대상 : 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
 - 감면물건 :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(보조금신청일 기준 이전 24개월이내 신규투자 취득분 포함)
 - 감면기간 : 고용보조금 최초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 지급받는 기간
 - 감면세목 및 감면율 :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
- 안 제30조의 3을 개정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것임.
- 감면예상세액은 총 9억 3,600만원 정도로 예상됨.
 - 취득세 : 468백만원
 - 등록세 : 468백만원
 - ※ 현재 고용보조금 수급업체의 부동산 신규투자액(23,435백만원) 기준으로 예상
-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지역내 중소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며,
-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개 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이전기관 소속직원의 정착지원과 거주지 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※ 참고자료

《 고용보조금 지급대상 》

○ 지원기준

- 지원업종 :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
- 지원대상 : 신청일 현재 충북도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
 -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 (신규투자 완료후 신청가능)
 - 기업규모별 최저투자금액 및 최소 신규고용인원

구 분	최소 신규투자금액	최소 신규고용인원
소기업(1~49인)	0.5억원 이상	1명 이상
중기업(50~299인)	3억원 이상	1명 이상

-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: 1인당 50만원이내, 12개월이내 지원